

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(제60조 관련)

등급	포상금 지급등급기준
1등급	1.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.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,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(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.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,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(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. 문화재청장이 지정,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(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를 손상·절취·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
2등급	2.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.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.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손상·절취·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
3등급	3.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.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.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.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.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손상·절취·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. 허가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재를 양도·양수 또는 중개한 자
4등급	4.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.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.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취득·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.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
5등급	5.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

※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